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57374 판결 [청구이의 및 점유회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선에이디테크

피고, 피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16. 1. 26.

판결 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4. 1. 16.자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2차6515)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0. 15. D 소유이 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한다)을 받았는데, 위 법원 집행관은 2014. 3. 20.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피고들의 대리인 F에게 인도함으로써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음에도, 피고들은 부당하게 발령받은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328호), 위 법원은 2014. 9. 4. "이사건 인도명령 자체나 그에 기한 인도집행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 뿐 피고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은 이사건 인도명령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도명령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피고들이 권리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 사우나 내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해왔는 데, 피고들이 위법, 부당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이 부분 부동산인도청구의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부분 부동산인도청구는 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도명령은 정당한 유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 부당하므로 그 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이에 따른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점유회수 내지 유치권의 회복이 불가능하게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40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들로서는 위채권액이 감안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 I,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도명령 자체나 그에 기한 인도집행 과정에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인도명령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청구이의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이의진, 판사 이차웅

부 동 산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 외 16필지 [] 아파트 제102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
 1층 1784.58㎡
 2층 1339.05㎡
 3층 1076.64㎡
 4층 1074.21㎡
 5~14층 각 1188.78㎡
 15~17층 각 258.03㎡
 지하1층 4309.095㎡
 지하2층 4886.0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양천구	대 48.1㎡
2. 서울 양천구	대 1.8㎡
3. 서울 양천구	대 249.7㎡
4. 서울 양천구	대 149㎡
5. 서울 양천구	대 1066.8㎡
6. 서울 양천구	대 576.8㎡
7. 서울 양천구	대 799.1㎡
8. 서울 양천구	대 501.8㎡
9. 서울 양천구	대 918.1㎡
10. 서울 양천구	대 599.9㎡
11. 서울 양천구	대 1486.8㎡
12. 서울 양천구	대 735.5㎡
13. 서울 양천구	대 1076.8㎡
14. 서울 양천구	대 927.1㎡
15. 서울 양천구	대 1582.7㎡
16. 서울 양천구	대 945㎡
17. 서울 양천구	대 1118.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제상가비01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304.4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2783.1분의 202.67

2.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 의 16필지 [] 아파트 제102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

1층 1784.58㎡

2층 1339.05㎡

3층 1076.64㎡

4층 1074.21㎡

5-14층 각 1188.78㎡

15-17층 각 258.03㎡

지하1층 4309.095㎡

지하2층 4886.0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양천구	대 48.1㎡
2. 서울 양천구	대 1.8㎡
3. 서울 양천구	대 249.7㎡
4. 서울 양천구	대 149㎡
5. 서울 양천구	대 1066.8㎡
6. 서울 양천구	대 576.8㎡
7. 서울 양천구	대 799.1㎡
8. 서울 양천구	대 501.8㎡
9. 서울 양천구	대 918.1㎡
10. 서울 양천구	대 599.9㎡
11. 서울 양천구	대 1486.8㎡
12. 서울 양천구	대 735.5㎡
13. 서울 양천구	대 1076.8㎡
14. 서울 양천구	대 927.1㎡
15. 서울 양천구	대 1582.7㎡
16. 서울 양천구	대 945㎡
17. 서울 양천구	대 1118.1㎡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제지하층 제상가비02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2.9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2783.1분의 87.62

3.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양천구 [] 외 16필지 [] 아파트 제102동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7층 아파트 및 상가
 1층 1784.58㎡
 2층 1339.05㎡
 3층 1076.64㎡
 4층 1074.21㎡
 5-14층 각 1188.78㎡
 15-17층 각 258.03㎡
 지하1층 4309.095㎡
 지하2층 4886.02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양천구	[]	대 48.1㎡
2. 서울 양천구	[]	대 1.8㎡
3. 서울 양천구	[]	대 249.7㎡
4. 서울 양천구	[]	대 149㎡
5. 서울 양천구	[]	대 1066.8㎡
6. 서울 양천구	[]	대 576.8㎡
7. 서울 양천구	[]	대 799.1㎡
8. 서울 양천구	[]	대 501.8㎡
9. 서울 양천구	[]	대 918.1㎡
10. 서울 양천구	[]	대 599.9㎡
11. 서울 양천구	[]	대 1486.8㎡
12. 서울 양천구	[]	대 735.5㎡
13. 서울 양천구	[]	대 1076.8㎡
14. 서울 양천구	[]	대 927.1㎡
15. 서울 양천구	[]	대 1582.7㎡
16. 서울 양천구	[]	대 945㎡
17. 서울 양천구	[]	대 1118.1㎡

(전유부분의 건물에 표시)

제지하층 계상가비03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202.7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 17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2783.1분의 133.64

끝.